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20년 8월 13일 (목)

CONTENTS

- 최저임금 수준, 중위임금 60%로 제도화
-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한국형 일가정양립정책’ 방향
- 아동학대범죄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이슈브리프

(IB 2020-08)

CONTENTS

I. 최저임금 수준, 중위임금 60%로 제도화 / 1

II.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한국형 일가정양립정책’ 방향 / 8

III. 아동학대범죄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 15

발행인: 지상욱

편집인: 이윤식

편집위원: 김창배, 나경태, 김태원(외부)

편집간사: 김진솔

발행일: 2020년 8월 13일

발행처: 여의도연구원

인쇄: 디엔시파크

Contents_

금주(8월 3째주)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한국형 일가정양립정책, 아동학대 근절방안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고질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주요국 사례를 참고, '최저임금-중위임금' 연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2편에서는 독일·스웨덴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일가정양립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하였고, 제3편에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사고 근절을 위한 정책 대안을 강구해보았습니다.

제1편: 최저임금 수준, 중위임금 60%로 제도화 (김창배 경제사회정책실장)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상당수가 불참 퇴장하는 파행 속에 의결. 반복되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방증. 이에 본 고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대비 60%를 상회,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점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실업이나 노동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요국의 실증적 사례를 감안, 이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로 연계되어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을 제안함

제2편: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한국형 일가정양립정책' 방향 (이윤진 연세대 사회 복지연구소 전문연구원)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노동, 그리고 자녀 돌봄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둔 정책적 변화가 없다면 궁극적으로 출산율 또한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독일은 남녀 평등한 사회적 문화의 변화,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등으로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스웨덴의 경우에는 남녀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자녀 돌봄 환경을 구축하였음. 현재 한국의 일가정양립 정책은 많은 개선을 거듭하고 있으나 양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할 때, △남녀 평등한 노동시장 여건 마련, △보육 및 교육을 포괄한 돌봄체계의 촘촘한 그물망 확보, △육아휴직제도의 수요자 중심 개선 등의 과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제3편: 아동학대범죄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나경태 연구기획실장)

국내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지난 10년(2009~2018)간 수치상 5,685건에서 24,604건으로 약 4배 이상 늘었으며,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의 숫자도 최근 5년간 132명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학대 건수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절이나 예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아동학대자의 약 80%가 부모이며, 대부분 가정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 따라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선 △가해자와 아동과의 분리정책, △형량 강화 및 투아웃 구속수사, △아동학대 전담 사법경찰관제 도입, △아동학대 신고의무화 제도 등의 도입·마련이 시급함

1. 최저임금 수준, 중위임금 60%로 제도화

작성: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 (kim.chang.bae@ydi.or.kr)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상당수가 불참·퇴장하는 파행 속에 의결. 반복되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방증. 이에 본 고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대비 60%를 상회,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인 점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실업이나 노동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요국의 실증적 사례를 감안, 이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로 연계 되어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을 제안함

1. 극심한 갈등... 노사정 합의 없는 최저임금결정 반복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보다 1.5%, 금액으로는 130원 상승

-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

○ 업종·지역·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 끝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

□ 올해도 노동자위원 전부, 사용자 위원 일부가 불참·퇴장하는 가운데 공익안이 표결 끝에 의결

- 민주노총 측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 입장에 반발해 막판 회의 참석을 거부했고, 한국노총 측 역시 9차 회의에서 표결 직전 집단퇴장하며 표결에 불참
- 사용자위원(2명)은 공익위원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퇴장

□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 필요성 재점화

- 관련 법안들이 수차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무산
 -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2019년 정부 개편안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
- 결정 주체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 정부, 단체협약 등으로 바꾸는 기존 대안들도 정치적 중립성, 노사 합의 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한계

□ 이에 본 고는 대안으로 최저임금을 중위임금 대비 60%로 제도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함

- 노사정 합의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발상의 전환’이 필요
-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비용 줄이고 최저임금 결정 예산의 절감, 나아가 경제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가 요망됨

2.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문제점

□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 촉발... 사회적 수용성 저하

○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보다는 노·사간의 세력 대결로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

-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최저임금의 4가지 결정기준보다 각자가 유리한 통계를 제시하며 일방적인 주장만 제시

• 2018년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자위원 측은 대통령 공약을 내세우며 10,000원을 최초 인상안으로 제시. 이는 전년(2017년, 6,470원) 대비 무려 54.6%나 증가한 금액

- 4가지 결정기준에 대한 반영비율에 대한 일관성, 투명성도 부족한 것이 노사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

• 2021년 적용 최저임금(1.5% 인상) 의결시 공익위원안의 근거는 '2020년 성장률 전망 (0.1%) +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이었음

• 하지만 2019년 적용 최저임금(10.9%) 의결시 공익위원안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 전망(3.8%) + 산업범위 확대에 의한 실질인상 효과 감소폭 감안 (1.0%) + 협상배려분(1.2%) + 소득분배 개선분(4.9%)'을 근거로 제시하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

○ 결국 양측의 수정안이 도출되지 못한 채, 세력이 불리한 일방이 심의 과정에서 퇴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실제로 2010년 이후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최저임금안 표결에 참여한 사례는 2017년, 2019년 두 차례에 불과

- 올해에도 민주노총은 불참하고, 한국노총은 공익위원 중재안에 반발해 퇴장

- 퇴장 속에 이루어지는 반쪽 표결, 4가지 결정기준에 대한 불투명성 등으로 최저임금의 사회적 수용성은 저하

□ 표결방식 무관하게 ‘기승전(起承轉) 공익위원’ 안 최종 결론

- 첫째, 노사 양측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경우
 - ‘캐스팅보트’를 쥐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판(2018년, 2020년)
- 둘째, 한쪽의 퇴장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
 - 공익위원들이 낸 별도의 안이 채택(2015년, 2016년, 2019년, 2021년)
- 셋째,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고 중재를 통해 적정 최저임금 의결을 유도(2017년)

〈표 1-1〉 역대 최저임금 결정 과정

적용년도	최초인상률 제시		최종 의결	표결 참여
	근로자측	사용자측	인상률(채택안)	
2015	28.5%	0.0%	7.1%(공익)	사용자측 퇴장
2016	79.2%	0.0%	8.1%(공익)	근로자측퇴장
2017	65.8%	0.0%	7.3%(사용자)	근로자측퇴장
2018	54.6%	2.4%	16.4%(노동계)	전원참여
2019	43.3%	0.0%	10.9%(공익)	사용자측 퇴장
2020	19.8%	-4.2%	2.9%(사용자)	전원참여
2021	16.4%	-2.1%	1.5%(공익)	근로자측퇴장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 영역별 대표성 문제와 공익위원의 독립성·중립성 논란

○ 노동계 위원 9명은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구성

-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양대 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만 대표한다는 비판 제기
- 반면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당수의 취약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위원은 비포함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는 점에서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

-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수진영,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보진영 중심으로 공익위원이 구성되었다는 평가
- 2018년 최저임금 급등(16.4%) 결정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건 현 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

3.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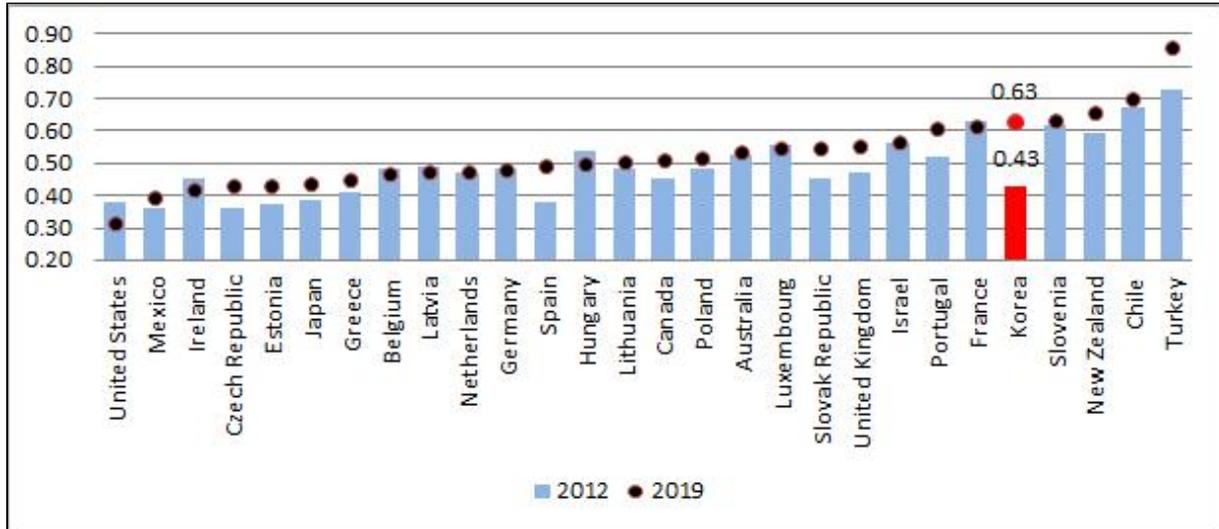
□ 최저임금을 중위임금 대비 60%에 연계되도록 제도화

①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

- 2019년 기준으로 0.63(63%)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OECD 28개국 중 5번째로 높음
- 미국(0.32, 28위), 일본(0.44, 23위), 독일(0.48, 18위), 영국(0.55, 9위), 캐나다(0.51, 14위), 프랑스(0.61, 6위) 등
- 상승속도도 최고를 기록 (2012년 0.43→ 2019년 0.63, 0.2%p 상승)

[그림 1-1] OECD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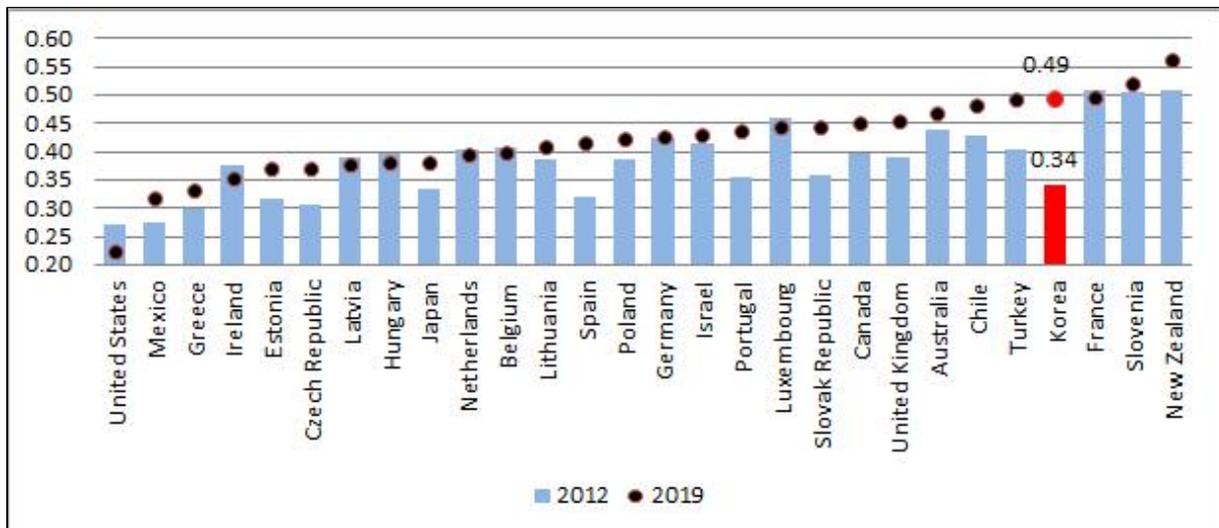


* 자료: OECD Dataset : Minimum relative to average wages of full-time workers

-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0.49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대통령 공약이었던 0.5에 육박
- 2019년 기준으로 28개국 중 4번째로 높음

[그림 1-2] OECD 국가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수준

(단위: %)



* 자료: OECD Dataset : Minimum relative to average wages of full-time workers

○ 중위임금 대비 60%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실업이나 노동시간에 부정적 영향

- 저임금고용 기준선(중위임금의 3분의 2)에 근접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면 저임금 발생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¹⁾
- 2015년 영국은 '국민생활임금'(NLW)'을 도입하면서 NLW가 중간 소득의 60%를 상회하는 시점부터 고용 유지 및 근무 시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²⁾
- 중위임금(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커질수록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는데 이것이 프랑스가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값의 60%에 도달한 이후 추가 인상을 멈춘 이유³⁾

○ 평균(mean)의 50%가 아닌 중위값(median) 60%가 더 적절

- 데이터의 분산 차이를 더 잘 설명하는 중위값이 국제 비교시 더 나은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
- 또한, 저임금고용 기준선도 통상적으로 중위임금의 3분의 2를 사용하고 있음

1) John Schmitt, '선진국의 저임금 노동: 경험과 교훈',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1년 12월호, pp.16~35.

2)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The effects of the National Living Wage",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15』, p.61.

3) 최경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2018.

II.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한국형 일가정양립정책' 방향

작성: 이윤진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전문연구원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노동, 그리고 자녀 돌봄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둔 정책적 변화가 없다면 궁극적으로 출산율 또한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독일은 남녀 평등한 사회적 문화의 변화,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등으로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스웨덴의 경우에는 남녀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자녀 돌봄 환경을 구축 하였음. 현재 한국의 일가정양립 정책은 많은 개선을 거듭하고 있으나 양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할 때, △남녀 평등한 노동시장 여건 마련, △보육 및 교육을 포괄한 돌봄체계의 촘촘한 그물망 확보, △육아휴직제도의 수요자 중심 개선 등의 과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1. 저출산과 일가정양립 정책

- 2019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전년대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
- 저출산의 영향요인을 한두개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은 지속적인 영향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음
 -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 돌봄과 경제적인 활동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때 여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우려 또한 발생
- 결국 저출산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인 자녀 돌봄 공백의 문제는 여성정책, 가족정책, 노동과 교육정책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함

- 일가정양립 정책은 돌봄정책, 노동시장 정책, 현금지원 정책 등을 모두 포괄함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으로 대표되는 시간정책,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의 현금지원정책, 보육서비스 및 초등돌봄 등의 돌봄서비스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음
 - ※ 참고로 2019년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장을 그만둔 이유 중 1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육아’로 그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 이와 같은 일가정양립 정책은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의 조화를 지향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가짐

2. 한국의 저출산 대응과 일가정양립 정책

- 한국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대표되는 아동 보육과 관련한 여러 법률 등을 통하여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지원, 육아휴직, 근로시간 유연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등이 구체적 예임
- 즉, 일가정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들이 기구축되어 있으나 그 내용적 측면에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
- 한편, 저출산 대응의 측면에서 일가정양립 정책을 살펴보면 여러 한계가 노출됨

- 일가정양립정책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모두 포괄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미시적 대응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보육) 무상보육 도입으로 양적으로 확대된 보육서비스는 질적 향상이 미비한 난관에 봉착
-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성별, 직종별 다양한 근로자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 (근로시간) 그 외 노동시장 정책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근로시간 정책 또한 기업규모별, 직종별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임

3. 독일 사례

- 독일은 2002년 이후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환하여 여성의 일과 육아를 동시에 지원한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였음
 - (독일 가족정책의 목표) 일과 양립을 보장하는 급여의 지원, 아동이 잘 자랄 수 있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급여 지원 등으로 제시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독일의 육아휴직제도를 참고할 만함
 - 근로와 상관없이 자녀출산 시 부모수당 지급
 - 독일의 육아휴직급여는 부모수당으로 불리는데, 출산 이후 일정 기간은 반드시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부모의 근로활동과 상관없이 일정 기간 주어지는 기본급여가 존재함
 - 남녀 평등한 육아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7년 육아휴직급여를 부모수당으로 명칭 변경
 - (남녀 평등한 육아휴직 사용 지원) 부모수당플러스 제도와 파트너십 플러스 제도를 통해 육아휴직기간 동안 경력 단절에 이르지 않고

일정 시간 일을 하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고
남녀 모두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 부모수당플러스(Elterngeld Plus): 출산 후 주당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를 하면서 최대 28개월간 부모수당 이용. 부모수당플러스 두 달이 부모수당 한 달에 해당하며, 월 지급액도 기본 부모수당의 50% 지급
- 파트너십보너스(Partnerschaftsbonus): 부모 모두 주당 25시간~ 30시간 시간제 근로를 하면서 함께 자녀를 돌볼 경우 부모수당플러스에 4개월 추가 지급
- (보육 받을 법적 권리) 보육정책으로 대표되는 돌봄정책은 법적으로 1세 이후가 되면 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마련되어 있음
- 최근에는 일부 주를 시작으로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임
- (기타) 대표적인 현금지원정책으로는 아동수당이 있는데, 18세까지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구직활동 혹은 교육을 위해 21세, 25세까지 연장되기도 함

4. 스웨덴 사례

- 스웨덴은 남녀 모두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에 주력
 -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남녀 평등한 노동시장 문화 등이 잘 발달되어 있음
- 20세기초에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
 - 그러나 출산장려 정책보다는 복지국가 강화를 통한 가족정책적 측면에서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시각을 정립

○ 즉, 출산율 증진 자체가 목적이 아닌 아이를 많이 낳고 잘 키우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집중한 것이 핵심적 내용

- (부모보험제도 도입) 1974년 부모보험제도를 세계 최초로 실시하면서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
- (보편적생계부양자 및 양육자모델) 1970년대를 거치면서 보편적 생계 부양자 및 양육자 모델로 전환하면서 육아가 여성의 몫이 아닌 부모의 몫이라는 것을 명확히 함
- (성평등한 노동시장) 또한 남녀가 동등하게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그 무엇보다 잘 조성됨

○ 아버지 양육의 보편화

- 라테파파 문화로 대표되는 스웨덴은 아버지의 강제적 육아휴직 사용 규정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 또한 증가

○ 보편적인 공보육서비스의 발달

- 2003년부터 3-5세 모든 아동에게 주당 15시간의 무상보육을 제공함
- 하지만 0-2세에는 대부분 부모휴가로 가정에서 직접 양육을 시행하며 부모휴가와 보육기관 이용을 동시에 할 수 없음
 - 그 외에도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노동시간의 25%까지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며 아동수당은 16세까지 지급

○ 결국 스웨덴은 일가정양립정책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면서 부모가 부모권과 노동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부담을 대폭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원인으로 저하되지 않는 현상을 통해 알 수 있음
- 또한,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으로 남녀간 자녀 돌봄 비중의 비형평성이 완화되어 있음

5. 정책제언: 한국 일가정양립 정책의 방향성

- 한국의 일가정양립 정책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정책적 아젠다’로 이미 자리 잡았음
 - 이러한 특성은 일가정양립 정책 수립 시 사회적 변화 및 시대정신을 반영하여야 함을 의미
 - 무조건 출산을 강요할 것이 아닌 ‘1) 일과 가정 양자의 균형을 어떻게, 2) 어느 정도 유지시킬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됨
 - △내 자녀를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권리, △내가 일하면서도 자녀를 키울 권리, △나의 일과 생활이 자녀의 양육으로 희생당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
- 일가정양립정책을 논하기 전에 저출산정책의 정확한 정책 목표가 우선 전제되어야 함
 - (한국 저출산정책의 목표) 출산율의 양적인 향상이 아닌, 낳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함
 - 일가정양립정책은 저출산 대응정책이지만 사회경제정책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야 함

- 이를 위해 부모권과 노동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수요자 중심적 개편이 필요함
 - (보편적인 육아휴직 이용) 무작정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기보다는 고용보험을 바탕으로 한 제도를 개편하여 모든 근로자가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근로와 병행가능한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의 낮은 급여 수준은 아직 까지 해결되고 있지 못하는 고질적 문제임. 따라서 독일처럼 육아휴직 기간 중 일정 시간의 근로를 병행 가능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 존재
- 무엇보다 아동이 질 높은 환경에서 보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공보육의 질적 향상 필요) 무조건적으로 무상보육과 공보육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권리를 모든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보장하되, 그 이후는 질 높은 공보육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환경 조성
 - (자녀를 돌볼 권리는 여성이 아닌 부모의 권리)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일하면서 자녀도 동등하게 돌볼 수 있는 환경은 기본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주체는 여성이 아닌 부모라는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함

Ⅲ. 아동학대범죄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작성: 나경태 연구기획실장 (na.kaeng.tae@ydi.or.kr)

국내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지난 10년(2009~2018)간 수치상 5,685건에서 24,604건으로 약 4배 이상 늘었으며,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의 숫자도 최근 5년간 132명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학대 건수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절이나 예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아동학대자의 약 80%가 부모이며, 대부분 가정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 따라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선 △가해자와 아동과의 분리정책, △형량 강화 및 투아웃 구속수사, △아동학대 전담 사법경찰관제 도입, △아동학대 신고의무화 제도 등의 도입·마련이 시급함

1. 아동학대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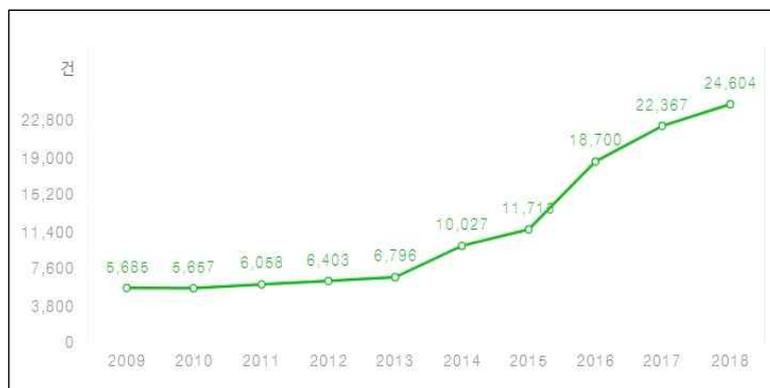
□ 아동학대 건수와 사망 아동 수

○ 아동학대는 매년 지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5,685건 → 2018년 24,604건으로 10년간 약 4.33배 증가

[그림 Ⅲ-1]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 접수 사례

(단위: 건수)



* 출처: 통계청(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 2014년부터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총 132명으로 2017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표 Ⅲ-1〉 아동학대 사망자 수

(단위: 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사망자 수	14	16	36	38	28

* 출처: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피해 유형 및 성별 구분

- 신체 학대와 정서 학대, 성 학대, 중복 학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 2018년 △정서 학대 2.86배, △중복 학대 2.21배, △성 학대 2.13배, △신체 학대 1.82배, △방임 1.3배 순으로 증가하였음

〈표 Ⅲ-2〉 아동학대 사망자 수

(단위: 건수)

	2015	2016	2017	2018
합계	11,715	18,700	22,367	24,604
신체 학대	1,884	2,715	3,285	3,436
정서 학대	2,046	3,588	4,728	5,862
성 학대	428	493	692	910
방임	2,010	2,924	2,787	2,604
중복 학대	5,347	8,980	10,875	11,792

* 출처: 보건복지부

- 성별 피해 사례는 남아보다는 여아가 많음
 - 2018년 24,604건 중 △남아 11,867건(48.2%), △여아 12,737건(51.8%)으로 여아가 870건(3.6%)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¹⁾

- 대부분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고 친인척, 대리 양육자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음
 - 2018년 아동학대행위자는 △부모 18,919건(76.9%), △친인척 1,114건(4.5%), △대리양육자 3,906건(15.9%)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아동학대 후 피해 아동의 상황²⁾

- 대부분 원가정 보호가 지속해서 이뤄지며 가정복귀 또는 분리조치를 하고 있음
 - 2018년 피해아동 상황은 △원가정 보호 지속 20,164건(82%), △가정복귀 1,020건(4.1%), △분리조치 3,287건(13.4%), △기타(가출, 교정시설 수용 등) 101건(0.4%), △사망 32건(0.1%)으로 나타남

1)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2)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2. 21대 국회, 아동학대법 개정안 제출 현황

□ 미래통합당 의원 제출 법안 주요 내용

○ 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안번호 2634)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 및 작량 감경³⁾ 규정에 대한 배제
- (제9조의 2 신설) 아동학대 범죄를 범할 때는 감면 규정 미적용

○ 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안번호 2178)

- 아동학대 범죄 피해 아동 중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에 근절을 기하려는 것임
- (제34조의 4 신설)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공소시효 적용하지 아니함

○ 태영호 의원 대표 발의(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안번호 2069)

-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중상해의 형량 하한을 상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 심리를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아동학대 등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4조 개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사형 또는 무기징역

3) 판사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작량해 형기를 깎아 주는 제도

- (5조 개정) 아동학대 중상해를 일으키면 3년 이상 → 5년 이상
- (61조 신설) 판사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김경재 의원 대표 발의(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안번호 1743)

- 피해 아동 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 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 시설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법경찰 또는 담당 공무원을 처벌코자 함
- (61조 3항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출 법안 주요 내용

○ 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안번호 2680)

- 창녕의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으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발견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행정력의 부재로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였음
- (10조 1항)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하게 하여 아동학대방지 신고 의무를 확대하려는 것임

○ 신영현 의원 대표 발의(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안번호 2637)

- 아동학대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신고된 현장뿐

아니라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 (11조 2항) ‘현장’을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로 함
- (61조 1항) ‘1천500만 원’을 ‘5천만 원’으로 함

○ 신동근 의원 대표 발의(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안번호 2414)

- 아동학대 현행법은 아동학대치사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형법」상 살인 죄보다 낮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의 범위 확대, 피해 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 의무화할 필요 있음
- (4조) ‘무기’를 ‘사형, 무기’로, ‘5년’을 ‘10년’으로 함
- (5조) ‘3년’을 ‘5년’으로 함

○ 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안번호 2130)

- ‘트렁크 사건’에서 트렁크에 갇힌 채 숨진 학대아동의 사례나 아동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보호명령 기간 종료로 가정으로 돌아간 5살 아이가 의붓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 (51조 1항)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변호사’를 ‘변호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을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함

3. 외국의 아동학대 예방정책 사례4)

〈표 III-3〉 외국의 아동학대 예방정책

국가	아동학대 예방정책 주요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로 가족 지원 서비스가 이뤄지며, 2차로 국가에서 책임 ■ 아동학대 발생 시, 사례마다 1명의 담당 사회복지사 배정되어 종결 시까지 서비스를 담당함 ■ 2016년 아동보호국 예산 중 아동보호에 대한 예산이 24%임 ■ 아동학대 사후 처리를 위해 차등적 대응 방법 도입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발생 시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조사나 일시보호 등 대부분의 법적 권한을 아동상담소장에게 부여함 ■ 아동학대방지법 9조1항에 따라 현장조사부터 법적 권한이 발생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 중심으로 진행된 부모 교육 프로그램 ‘my tree parents program’ 전국 도입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조기개입과 예방에 초점을 맞춘 가족 중심의 서비스 실시. 특히 아동과 함께 부모 서비스도 지원 ■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방, 공공기관, 민간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working together’ 구축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 모든 아동과 부모를 위한 교육 실시. 아동: 권리인지, 학대 상황 판단 능력을 위한 교육. 부모: 학대 예방적 교육, 양육 기술 훈련 ■ 학대가 발생한 경우 가족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스웨덴 지방정부의 전체 예산 중에서 아동 관련 예산은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50%가 아동보호 예산으로 사용됨

* 출처: 박언하(2018), 한국의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개선방안

4) 박언하(2018). 한국의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개선방안: 아동의 아동학대 예방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복지상담학회 제7권 1호

□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정책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1차적으로 가족 중심의 위험 요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가족의 역기능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취약한 경우 2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함
 - 아동학대 정책은 미국 50개 주와 1개의 특별구에서 동일한 정책과 방향성을 갖고 있음
- 미국의 아동학대법인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은 아동보호에 관한 정부의 개입과 재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와 지원은 주 정부, 지원 서비스 책임과 기준은 연방정부에서 담당
 - 연방정부 아동 담당은 ‘아동보호국’으로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며, 2016년 아동보호국 전체 예산의 24%가 아동보호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
- 미국은 아동학대 정책을 사후 대처보다는 예방적 정책 중심으로 펼치고 있으며 예산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음
 - 1차 예방 프로그램: 아동 발달과 양육에 대한 부모 교육,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 2차 예방 프로그램: 부모의 약물, 빈곤이 아동학대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로 판단하여 교육, 임시보호, 가정방문 실시
 - 3차 예방 프로그램: 아동학대가 일어나거나 의심되면 부모 교육, 집중적 가족 보존, 정신보건 서비스 실시

□ 일본의 아동학대 예방정책

- 일본은 2000년 아동학대방지법 시행을 기점으로 2004년 아동학대 방지법 개정, 2007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계기로 법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음
 - 아동학대 지원정책은 주로 공공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가해자인 학대 부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
-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다소 일찍 아동학대 예방정책에 관심을 가졌으며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예방, 조기 발견, 조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학대를 받는 아동 보호와 자립을 지원함
 - 아동학대의 중요한 법적 권한은 관할 아동상담소장에게 있으며 대부분 아동학대 사례는 아동상담소에 연결되어 있으며 지원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 일본은 아동학대에 관한 정책은 시정촌⁵⁾, 아동상담소, 요보호 아동 대책 지역협의회를 두고 각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시정촌은 기본적인 아동학대 보호 조치를 취하고 아동상담소는 긴급 보호, 긴급 개입 등의 임시조치를 요보호 아동대책 지역협의회에서는 각 기관의 연계, 정보를 공유함
- 일본은 2001년 아동학대 이후 ‘my tree parents program’ 도입
 -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체벌, 폭언, 협박을 바로잡고 부모와 자녀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5) 시정촌(일본어: 市町村 시초손[*])은 일본의 지방 자치 제도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일본어: 市), 정(일본어: 町 조[*]), 촌(일본어: 村 손[*])을 묶어 이르는 말

□ 영국의 아동학대 예방정책

- 영국은 2000년에 ‘빅토리아 클럽비 사건’을 계기로 2004년 아동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2008년에도 개정되었음
 -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 국가의 법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특히 조기개입, 예방적 대처를 강조하고 있음
- 영국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위한 지원 뿐만 아니라 부모도 보호 대상을 간주하여 같이 지원함
 -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펼치고 있음
- 국가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두고 있음
 - △첫째: 신체적·정신적 건강, △둘째: 유기와 위해로부터의 보호, △셋째: 삶의 성취감과 즐거움, △넷째: 지역사회에 개입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긍정적인 기여, △다섯째: 삶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할 때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제적인 복리 달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노력하고 있음
- 아동을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개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의 협력을 시행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포괄적인 서비스에 대해 지침을 개발하고, 지방정부는 서비스 지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중앙정부 지침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재량권을 행사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과정을 총괄함

□ 스웨덴의 아동학대 예방정책

- 스웨덴은 1970년대 이후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방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
 - 부모나 후견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체벌이나 정서적인 벌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인 손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줬을 경우 최고 2년의 구금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며 학대 수준이 심각한 경우에는 10년 구금형이 가능함
 -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발달이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될 때 사회복지위원회의 개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스웨덴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책임과 역할을 배분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아동학대에 관한 보호와 예방을 위한 개입의 목표를 수립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정부는 심리 상담, 의료적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NGO의 역할은 적은 편임
- 스웨덴의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예방적 접근은 ‘교육’시스템에 잘 나타나 있음
 -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 사업의 첫 시작은 아동과 부모의 교육임
 -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며 학대 상황들을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음
 - 부모는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 유형에 대한 인지·예방 교육

4.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 ‘피해자 분리정책’에서 ‘가해자 분리정책’으로 전환
 -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대부분 가해자가 부모인 관계로 원가정 보호(82%), 분리조치(13.4%) 등 피해자인 아동을 분리하는 정책을 주로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 가해자 분리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 강화
 - 아동학대 범죄 상한 형량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범의 경우 무조건 구속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아동학대 투아웃 구속수사 제도 도입)

- 아동학대 범죄 수사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사법경찰제’ 도입
 - 학교폭력이 극심했던 2012년 도입, 1인당 10개교를 담당하여 학교폭력이 지속해서 줄고 있어 효과를 입증한 바, 아동학대 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아동담당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아동학대 신고의무화 제도 도입
 - 현행법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만을 지정하고 있지만, 누구든 아동학대를 보거나 의심되는 상황을 보는 사람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 신고인의 익명 보장 도입 및 신고인의 신변보장까지 가능해야 함

이슈브리프 목록 (최근 발간順, 2018.11.8~現在)

이슈브리프 2020-07 (발간일: 2020.7.23)

-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 2020 美 대선 판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 ▶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인 피해 현황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6 (발간일: 2020.6.25)

- ▶ 악화일로 국가재정,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 ▶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현안과 과제
- ▶ '남북 공동선언' 재점검과 과제: '6·15선언'을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2020-05 (발간일: 2020.5.28)

- ▶ '전국민 고용보험제' 우파적 대안 모색 시급 ▶ '김정은 신변이상설': 대응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 ▶ 영국 보수당의 장수 비결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4 (발간일: 2020.4.2)

- ▶ 역대 총선에서의 사전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시사점 ▶ 文정권 정책평가와 국정지지도 비교 및 상관관계 분석
- ▶ 'n번방' 사태: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해외사례 검토 ▶ 신종 코로나 충격의 고용감소 추정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3 (발간일: 2020.3.12)

- ▶ 신종코로나의 경제쇼크, 정부대응과 시사점 ▶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북한: “바로 보기” ▶ 포털의 댓글과 실시간검색어 폐지: 의미와 과제

이슈브리프 2020-02 (발간일: 2020.2.13)

- ▶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반' Top 10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세대상생형 주거정책 방향 ▶ 대한민국 2040년: 정치인재 양성과 한국당의 과제

이슈브리프 2020-01 (발간일: 2020.1.16)

- ▶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 ▶ 최근 美-이란간 충돌 관련: 현황, 파장, 전망 ▶ 2030 사로잡은 美·日 청년보수정치 사례분석 ▶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2019-11 (발간일: 2019.12.19)

- ▶ '초슈퍼' 예산과 '초미니' 재정승수 ▶ 2019 펄스 열풍의 사회적 의미와 교훈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의 쟁점과 대응방향

이슈브리프 2019-10 (발간일: 2019.11.21)

- ▶ 탈북자 강제복송: 흔들린 원칙, 상처받은 국격(國格) ▶ 공유모빌리티 '타다' 관련 쟁점 및 시사점 검토
- ▶ 위험적이며 정치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이슈브리프 2019-09 (발간일: 2019.10.31)

- ▶ 공수처,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악(改惡)' ▶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 점증하는 장기 복합불황 공포

이슈브리프 2019-08 (발간일: 2019.10.10)

- ▶ 文정부 '역대 최고 고용률'의 실상과 대책 ▶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의도, 평가, 전망 ▶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성

이슈브리프 2019-07 (발간일: 2019.9.19)

▶ 미국궤 '한-일 핵무장론' 대두: 쟁점과 대책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 국민연금 재정위험과 개편방안

이슈브리프 2019-06 (발간일: 2019.8.29)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배경, 의도, 파장 ▶ '강대강' 대응으로 일본 수출규제 고착화 우려 ▶ 확대되는 1인 가구와 보수주의 가족가치

이슈브리프 2019-05 (발간일: 2019.3.14)

▶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 유튜브 '슈퍼챗' 논란, 정치자금법의 한계와 시사점 ▶ (현안보고) 베트남 미북회담 '노딜': 원인, 평가, 전망

이슈브리프 2019-04 (발간일: 2019.2.28)

▶ 궤변으로 덮을 수 없는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 ▶ 사용자 제로, 제로페이 ▶ 자치경찰제, 성급한 도입으로 인한 실패 우려 ▶ (현안보고) 2차 미북정상회담 전망: 쟁점과 대책

이슈브리프 2019-03 (발간일: 2019.2.14)

▶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의 출발점은 일자리 창출 ▶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 드라마 <SKY캐슬>을 통해 본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 (현안보고)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20개월 경제 성적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패(必敗) 경고음"

이슈브리프 2019-02 (발간일: 2019.1.24)

▶ 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민낯과 과제 ▶ 주택공시가격 급속 인상의 문제점 ▶ 2018 교육여론조사(KEDI POLL) 분석 ▶ 현실과 동떨어진 자동차세와 과세기준 개편 필요

이슈브리프 2019-01 (발간일: 2019.1.10)

▶ 저출산 인식에 대한 우리 당의 반성과 인식의 전환 ▶ 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없애려고 하는가? ▶ 거짓 통계로 오염된 한국의 소득분배 ▶ (현안보고) 북한 및 한반도 정세: 평가, 전망, 대응

이슈브리프 2018-24 (발간일: 2018.12.20)

▶ 일본 공적연금 개혁의 시사점 ▶ 2018 유럽연합(EU) 청소년 정책 방향과 시사점 ▶ 인공지능(AI)과 정치인의 미래 ▶ (현안보고) 對국민 경제인식 조사 분석 결과

이슈브리프 2018-23 (발간일: 2018.12.6)

▶ 광주형 일자리, 의의와 한계 ▶ 생계형 일자리로 내몰리는 노인들 ▶ 왜 미국 중간선거에는 가짜뉴스가 없었나 ▶ (현안보고) 자유한국 i노믹스(inomics) 해설

이슈브리프 2018-22 (발간일: 2018.11.22)

▶ 미세먼지 피해는 커지는데 대책은 제자리걸음 ▶ 해외 주요 방송사의 현황 및 시사점 ▶ 성 혐오 갈등 사태로 본 건강한 토론장의 필요성 ▶ (현안보고) 연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과 그 시사점 ▶ (현안보고) 정부·여당의 사립유치원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브리프 2018-21 (발간일: 2018.11.8)

▶ 경제 현실을 외면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 자유한국당의 선거전문가정당화를 위한 모색 ▶ 남북합의 비준 논란 관련 핵심 쟁점 및 평가 ▶ (현안보고) 공공기관 고용세습 사태의 쟁점과 대응방향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미래통합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